

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담당 부서 | 법령정비과 | 배포일시 | 2021. 11. 25.(목) / 총 6장 (※ 붙임 포함, 사진 별도) |
| 담당자 | 과 장 임지연 사무관 최진규 (044) 200-6574 | | |

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,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

- 불합리·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-

- “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·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”, “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”
 -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·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,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‘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.
 -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·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‘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결과를 발표하고, 시상식을 개최했다.
 - 3개월(2021.4.1.~6.30.)의 공모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,
 - 내·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9건*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, 우수상 3명,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.
- * 붙임: ‘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우수과제 목록(9건)

〈최우수〉 일시적 주거·생계 지원,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까지 확대

□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*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곽호창 씨에게 돌아갔다.

*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제4호 참조)

- 현행 규정에서는 ‘일시지원복지시설’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, 아동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,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〈우수 1〉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기준 마련

□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, 유지·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조봉현 씨에게 돌아갔다.

- 법률에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, 유지·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,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.
- 조봉현 씨는 “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〈우수 2〉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, 이자 붙여 환수 말아야

□ 두 번째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*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승미 씨에게 돌아갔다.

*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함(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참조)

-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 지급금의 '부정청구등'에 포함하고,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,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(2021.10.18. ~ 11.29.) 중이다.

〈우수 3〉 손자녀 키우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

□ 세 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조철규 씨에게 돌아갔다.

- 고령화,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,

*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, 사고, 양육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가능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과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.

- 이강섭 법제처장은 “올해는 국민 권익 증진,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더욱 뜻깊은 공모제였다”면서,
 - “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불합리·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한편,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‘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’를 운영하고 있다.

| 수상내역 | 관련법령 | 제안 요지 | 부처의견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최우수상 |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 |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아동의 '부'까지 확대 *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확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 복지시설 지원대상은 '모'로 한정되어 있음. | 여성가족부 (수용) 법령 개정 추진 |
| 우수상 |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|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기준 마련 * 5층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장애인 등 이동 등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한 적합한 설치 또는 유지·관리사항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음. | 소방청 (수용) 법령 개정 추진 |
| 우수상 |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|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 사항 개선 * 국민의 고의·과실 없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민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| 국민권익위원회 (수용) 법령 개정 추진 |
| 우수상 |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|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 지원 근거 마련 * 현재 근로자인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, 사고, 양육 등의 사유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를 일정기간만(90일, 10일) 사용 가능함. | 고용노동부 (증장기검토) *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려 등 증장기 추진 검토 |
| 장려상 |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| 대학원 논문 심사 및 지도비 기준 정비 * 현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제출 의무 및 관련 심사료 징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심사료 기준 마련 필요. | 교육부 (증장기 검토) * 논문 심사비 및 지도비의 징수현황 등 확인 및 규제 필요성 등을 증장기 검토 후 추진 |
| 장려상 |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| 사회적기업 수요 대상인 취약계층 확대 *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에 저소득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확대 필요. | 고용노동부 (일부수용) * 현재 청소년 취약계층에 '보호종료아동'이 포함 되어 있고,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등으로 확대 정비 추진 예정 |
| 장려상 |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| 교권,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* 현재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교권, 교원,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데,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규정 되어 있어 통일 필요 | 교육부 (수용) 법령 개정 추진 |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장려상 | 도로교통법 제27조 | 차량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차량 일시정지 개선 * 현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및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 높음. | 경찰청 (수정수용) *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명확화 하는 법령개정 준비 중 |
| 장려상 |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 | 청년 취업지원 대상을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까지 확대 * 현재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의 청년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고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중·장기 복무 후 제대군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법령상 사각지대 발생 | 고용노동부 (일부수용) * '22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, 「청년 고용촉진 특별법」 상 연령기준 확대는 종합적인 검토 필요 |